

1. 개정이유

자동차검사를 할 때 자동차등록증을 반드시 제시하여야 하는 국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자동차등록증 확인 규정을 폐지하여 자동차 소유자가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,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를 명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으로 「자동차관리법」이 개정(법률 제18051호, 2021. 4. 13. 공포, 2021. 10. 14. 시행)됨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하는 세부 처분기준을 정하려는 것임.

아울러, 과징금 또는 과태료 등 부과기준에서 일정기간 이전에 누적된 위반차수 적용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가중처분 규정 해석의 혼란이 야기된다는 지적이 있는 바,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을 명확화 하려는 것임.

2. 주요내용

가. 종합검사 및 재검사 신청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 폐지(안 제4조 및 제7조)

- 자동차종합검사 및 재검사 시 자동차등록증 제시 의무를 폐지함으로써 자동차검사를 받으려는 운전자들이 자동차등록증을 소지하지 않고도 자동차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.

나. 자동차검사 기술인력의 교육 미이수에 대한 처분기준 마련(안 별표4 제2호)

- 기술인력이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 대한 제재방안이 없던 것을 정당한 사유 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않을 경우 해임 또는 직무정지할 수 있도록 함.

다. 가중처분을 위한 누적 차수 적용기간 명확화(안 별표4)

- 위반행위가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 반영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을 명확히 정함.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2) 입법예고(9999. 12. 31. ~ 12. 31.) 결과, 특기할 사항 없음

3) 행정규제 :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, 이견 없음
- 규제 신설·폐지 등, 없음

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령안

자동차종합검사의 시행 등에 관한 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4조 본문 중 “자동차등록증과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”를 “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”로 한다.

제7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자동차등록증과 제5조제4항”을 “제5조 제4항”으로 한다.

별표 4 제1호다목 중 “(나목에 따른”을 “(가중처분 적용”으로 하고, 같은 목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단, 적발된 날로부터 2년 이전에 한 부과처분은 가중처분의 차수를 정할 때에 반영하지 않는다.

별표 4 제2호에 어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어. 법 제46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자동차검사에 관한 교육을 받지 아니한 경우	법 제46조제2항제9호	1차: 직무정지 30일 2차: 직무정지 60일 3차: 직무정지 90일
---	--------------	--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칙은 2021년 10월 14일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행정처분기준에 관한 적용례) 별표4 제2호 어목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하는 기술인력 교육을 위반한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	행	개	정	안
제4조(종합검사의 신청) 법 제43	제4조(종합검사의 신청) -----			
조의2에 따라 종합검사를 받으	-----			
려는 자(이하 “검사신청인”이라	-----			
한다)는 <u>자동차등록증과 「자동</u>	----- 「자동차손해배상 보장			
<u>차손해배상 보장법」 제5조</u> 에	<u>법」 제5조</u> -----			
따른 보험 등(이하 “보험등”이	-----			
라 한다)의 가입증명서를 법 제	-----			
44조의2에 따른 자동차종합검	-----			
사대행자(이하 “종합검사대행	-----			
자”라 한다) 또는 법 제45조의2	-----			
에 따른 자동차종합검사지정정	-----			
비사업자(이하 “종합검사지정	-----			
정비사업자”라 한다)에게 제출	-----			
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	-----			
한다. 다만, 종합검사대행자 또	----. -----			
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가	-----			
전산망을 통하여 보험등의 가입	-----			
여부를 확인한 경우에는 보험등	-----			
의 가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아니	-----			
할 수 있다.	-----.			
제7조(재검사) ① 제5조제3항 본	제7조(재검사) ① -----			
문에 따라 종합검사 실시 결과	-----			
부적합 판정을 받은 자동차의	-----			
소유자가 재검사를 받으려는 경	-----			

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(이하 “재검사기간”이라 한다) 내에 종합검사대행자 또는 종합검사지정정비사업자에게 <u>자동차등록증과 제5조제4항</u> 또는 제6조제1항에 따라 발급받은 자동차종합검사 결과표 또는 자동차기능 종합진단서를 제출하고 해당 자동차를 제시하여야 한다. 1. 2. (생략) ② ~ ⑤ (생략)	----- ----- ----- ----- -- <u>제5조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 1. 2. (현행과 같음) ② ~ ⑤ (현행과 같음)
---	---